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2개의 총리령·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
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정하며, 임대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소(영업자 또는 공장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임차하거나 게임제
작업, 게임배급업의 영업소나 공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	--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15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소(영업자 또는 공장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게
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의 영업소나 공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무소장은”을 “관리사무소장
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으로,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
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
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I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영업자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별표 1 II 제4호가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I. 일반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함께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는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4조(「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

제16조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5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수리”를 “접수”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3일”을 “즉시”로 한다.

제6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4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의 시설 및 제2호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장비의 경우에는 공동사용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과 사후관리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0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과 사후관리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제8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

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6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설치할”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를 함께 사용”로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하거나 다른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

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검사시설의 지정기준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시설 및 제2호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시설 및 검사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 설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로서 영업소를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	--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제24조(「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2호의 기구 중 계량기, 수분측정기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5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주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8 제1호 주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계·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26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의5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정비교육훈련기관으

로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7조의21제4항 중 “수리”를 “접수”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3일”을 “즉시”로 한다.

제28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
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
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
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수리한”을 “접수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변경승인 신청	10일

제31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 공동사용계약”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부터 22)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 공동사용계약”으로 한다.

제32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리가 된 것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리가 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리가 된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 ----- ----- ----- ----- ----- ----- ----- ----- ----- -----.
1. <u>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u>	1. <u>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2. <u>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u>	2. <u>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정하며, 임대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3. (생략) ② (생략)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u> 3. (생략) ④ ~ ⑥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영업소(영업자 또는 공장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임차하거나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의 영업소나 공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u>관리사무소장은</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u>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u> <u><후단 신설></u>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u><후단 신설></u>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 ----- ----- <u>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u> ----- ----- ----- ----- ----- 한다. 이 경우 교육수탁기관은 <u>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u>

⑤ (생략)	<u>다.</u> ⑤ (현행과 같음)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3. (생략) ③ ④ (생략)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생략)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
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
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0조(안전교육) ① (생략)

<신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
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
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 다만, 교육대상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

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

-----.

1. (현행과 같음)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

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

제33조(수수료) ① -----

----- 한국광해광업공단-----
-----.

②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
-----.

③ -----

----- 한국광해광업공단-----
-----.

----- 한국광해광업공단-----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 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u>수리</u>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 ----- ----- <u>접수</u>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① (생략)	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교육)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u>
<u>③·④</u> (생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 -----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② (현 행과 같음) <u>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 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 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
③ (생 략)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 육) ① (생 략) <u><신 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 육)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 육대상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 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

<u>②</u> · <u>③</u> (생략) <신설> <u>④</u> (생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u>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생략) <u><신설></u>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u>5일</u>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 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u><신 설></u>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3일 -----. ----- -----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 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 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 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3 항의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을 같음할 수 있다.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 조제1항 -----</u> ----- ----- ----- ----- -----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 등) ① (생략)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u><신 설></u>	제13조(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u> ----- ----- ----- ----- ----- ----- -----.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기관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기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 ----- ----- -----.
--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 시간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 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설></u>	<u>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u>
<u>④ ~ ⑥</u> (생략)	<u>⑤ ~ 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u>③</u> · <u>④</u> (생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 ----- ----- ----- ----- ----- ----- ----- -----.
1. <u>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u>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 <u>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2. <u>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u>	2. <u>시설 및 장비 명세서(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② (생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2. (생략)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u>에 한한다</u>) 4. 5. (생략) ④ ⑤ (생략)	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 사본(임차하거나 온라 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로 서 영업소를 공동사용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u> 4. 5.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략)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u>수리</u>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 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 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④ ----- ----- ----- <u>접수</u> ----- ----- ----- -----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안전·위생교육) ① (생략)	제3조(안전·위생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u><후단 신설></u>	② ----- -----. <u>이 경우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생략) <u><신 설></u>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u>수리한</u>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접수한</u> ----- ----- ----- ----- -----.